#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70

발의연월일: 2021. 3. 18.

발 의 자:권인숙·서동용·강민정

이용우 · 김철민 · 정청래

장혜영 • 윤미향 • 소병철

민형배 · 진선미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와 비교할 때 동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의 수가 지나치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위원의 성(性) 비율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등 징계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 전제인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담보되지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에 대하여 국민 상식

에 부합하는 공정한 징계심의와 의결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법률 제 호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중 "5명"을 "7명"으로, "9명"을 "11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명"을 "3명"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6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	②
회는 <u>5명</u> 이상 <u>9명</u> 이하의 위	<u>7명</u> <u>11명</u>
원으로 <u>구성한다</u> .	<u>구성하되, 특정 성(性)이</u>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b>4</b>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	
한다.	<u>.</u>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1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	
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	
다)을 최소 <u>1명</u> 이상 포함할	<u>3명</u>
것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